



고용노동부

# 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비수도권 직업훈련기관 준수사항 조정 안내

## 1. 관련

가.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른 준수지침 안내(인적자원개발과-4173, 2020.11.3)

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(2021.2.7.)

2. 위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2단계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준수사항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구 분	비수도권(거리두기2단계+방역수칙조정)		적용시기
	변경 전	변경 후	
직업훈련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음식섭취금지</li> <li>▶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</li> <li>① 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/li> <li>②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<b>21시 이후</b>(익일 05시까지) 운영중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음식섭취금지</li> <li>▶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</li> <li>① 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/li> <li>②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<b>22시 이후</b>(익일 05시까지) 운영중단</li> </ul>	2.8.~ 2.14.

\* 참고: 수도권은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변경 없음.

3. 지방고용노동관서,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훈련기관 등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시 처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## 고용노동부장관



수신자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, 지방관서(직업능력개발부서), 제주특별자치도(고용센터장), 고객상담센터소장, 한국고용정보원장(능력개발팀장),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,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(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)

주무관 **양민호** 행정사무관 **정영란** 행정사무관 **진혜숙** 대결 2021. 2. 8. 과장 전결

협조자

시행 인적자원개발과-545 (2021. 2. 8.) 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/ 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

전화번호 044-202-7320 팩스번호 044-202-8036 / [proscon@korea.kr](mailto:proscon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